

화 용 론 연 구

배 기 무 · 김 영 철

A Study on Pragmatics

Ki-Moo, Bae · Young-Chul, Klm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화용론의 정의 및 연구영역

2. 수행말화문과 세 종류의 행위

3. 화행의 조건과 간접 화행

4. 회화상의 함축

5. 수행말화문 분석과 회화의

공준

III. 결 론

Bibliograph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some important notions on pragmatics in detail through the literature on pragmatics because the grasp of the notions would be essential for the future study on pragmatics.

So this study comprises the definition and realm of pragmatics(2.1), performatives and three kinds of acts (2.2), speech act conditions and indirect speech acts (2.3), conversational implicature(2.4), and performative analysis and conversational postulates(2.5).

As a conclusion, it is proposed that the polite principle, apart from the well-known least effort principle(e.g. Grice's Maxim of Quantity), would be helpful to explain the pragmatic phenomena. And, pragmatics cannot be reduced to rule, but at least through such techniques of analysis as are suggested by Grice's notion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we can partially explain aspects of language behaviour which would otherwise seem perplexing and haphazard.

I. 서 론

화용론(pragmatics)은 언어표현과 그 사용자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언어이론이다. 이 말은 행동주의 언어학자인 Charles Morris(1938)가 기호가 나타나는 세양상을 통사론(syntax), 의미론(semantics) 및 화용론(pragmatics)으로 분류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변형생성문법이 대두되면서부터 언어 기술은 통사론 중심으로 흐르게 되었고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관계되는 언어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간단히 말해서 시기상조(prematurity)와 원칙상 불가능성(principled impossibility)으로 요약될 수 있다. Chomsky(1972)에 의해서도 '언어기술이 궁극적으로는 의미와 언어사용을 포함하는 폭넓은 틀 속에서 연구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언어의 형식(form) —즉 통사론—에 연구의 중점을 두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There is, of course, no doubt that language is designed for use. The study of language form will ultimately find its place in a broader framework that will incorporate considerations of meaning and use, just as the study of grammar will ultimately find its place in a richer investigation of how knowledge of language is acquired. (Chomsky 1972: 119)

Chomsky의 이런 태도는 언어능력(competence)과 언어수행(performance)의 구분에서 '문법'(grammar)의 대상을 전자인 언어능력에 대한 기술에 두고 언어사용 즉, 화용면을 후자인 언어수행의 문제로 처리하여 일단 '문법'기술 영역 밖으로 밀어버리는 그의 언어이론에서 비롯된다. 초기 변형 문법에서 의미론 분야를 개척한 Katz와 Fodor(1963)는 Chomsky의 영향을 받아 언어사용에 대한 이론정립은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But a complete theory of this kind is not possible in principle; for to satisfy the above necessary condition it would be required that the theory represent ALL the knowledge speakers have about the world. (p. 178)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와서부터 화용론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바람을 몰고온 것은 바로 J.L. Austin(1962), J.R. Searle(1969) H.P. Grice(1975) 등의 언어철학자와 그들의 뛰어난 저서 및 논문이었다. 이들은 언어사용면도 체계적(systematic)이며 연구대상이 될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성공적인 의사소통 책략이 어느 정도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rule governed)것일 뿐 아니라 소위 엄격한 의미에서의 문법현상과도 상호작용을 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때를 맞추어 Ross, Lakoff 등 생성의미론자들은 상기 언어철학자들의 통찰력을 문법이론에 직접 포함시키는 일에 수용적 태도를 지니게 되어 1970년대에 들어서는 화용론이 크게 논의되기도 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화용론의 추상적 문법이론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위에 언급한 언어철학자들의 통찰력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언어 현상의 제약상을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용론 연구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화용론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개념을 세밀히 파악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화용론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쓰여졌다. 따라서 본고의 중요 내용은 화용론의 정의(2·1) 수행발화문(performatives)과 세 종류의 행위(2·2) 화행의 조건(speech act conditions)과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2·3) 회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2·4) 수행발화문 분석(performative analysis)과 회화상의 공준(conversational postulates)(2·5) 등이며, 이들의 개념 및 내용을 그 주요 저서 및 논문을 통해 서술해나가는 형식을 취하겠다.

II. 본 론

1. 화용론의 정의 및 그 연구영역

화용론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우선 기호학의 세 분야인 통사론(syntax), 의미론(semantics), 화용론(pragmatics)의 구분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호학의 제창자 Charles Morris(1938)에 의하면 첫째, 기호들은 자체들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있고, 둘째, 기호들은 기호 이외의 사물들에 대하여 지칭, 지시, 의미, 함의 대응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 기호들은 기호 이외의 사물들에 대하여 또 다른 관계 즉 기호 사용자의 발설, 반응, 의도, 주의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통사론이 기호들 간의 관계를, 그리고 의미론이 기호와 사물간의 관계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데 비하여 화용론은 사람이 기호와 사물에 대하여 갖는 관계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통사론에서의 기호들은 아직 대상과의 관계를 갖기 이전이므로 의미가 없는 기호들이다.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은 자연언어를 형식체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형식체계의 기호들은 아직 의미부여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그 체계의 문장들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형식체계에 의해 적형이나 아니냐일 뿐이다. 진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미론은 기호와 사물들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책상’이라는 기호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물과도 연결되지 못할 때 그것은 의미부여를 받지 못한 통사적 기호일 뿐이다. 그것이 특정한 사물과 관련을 맺게될 때 비로소 의미있는 기호가 된다.

화용론은 기호와 대상에 대해서 사람이 갖는 관계이다. 통사론과 의미론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문장들에 국한되었다. 의미언어체계란 참인 문장들의 어떤 체계이고 통사언어체계란 의미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언어는 통사언어체계나 의미언어체계 안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언어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된다. 예를들어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문장의 진위문제는 ‘나’와 ‘지금’의 특징규정이 있어야만 그 해답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의미론의 진리문제는 문장사용자의 상황과 독립해 있음에 반하여 화용론의 문장은 그러한 상황에 의존적이다. 기원문, 명령문, 의문문등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언어표현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의미론에서처럼 그 진리 조건에 의해서 의미 규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의 사용자와 그 사용의 문맥에 따라 그 표현들이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문장문법(sentence grammar)에서의 의미와 담화문법(discourse grammar)

에서의 의미의 차이를 보자.

- (1) a. Donkey means 'ass'.
- b. When Miss Trotwood said 'Janet! Donkeys!' she meant by this remark that Janet was to drive the donkeys off the lawn. (Leech 1981: 320)

(1a)에서의 의미가 'X means Y'라면 (1b)에서의 의미는 's means Y by X'라 할 수 있다. 즉 문장문법에서의 의미가 이치적(bivalent)이라면 담화문법에서의 의미는 삼치적(trivalent)이라 할 수 있고 바로 이 삼치적 용법의 의미가 화용상의 의미라 하겠다.

이런 삼치적 용법의 의미의 특성을 Leech(1981)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i) it involves the speaker's intention to convey a certain meaning which may, or may not, be evident from the message itself.
- (ii) consequently, interpretation by the hearer of this meaning is likely to depend on context; and
- (iii) meaning, in this sense, is something which is *performed*, rather than something that exists in a static way. It involves *action* (the speaker producing an effect on the hearer) and *interaction* (the meaning being 'negotiated' between speaker and hearer on the basis of their mutual knowledge). (p. 320)

즉 화용상의 의미는 정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수행되는(performed) 동적인 어떤 것이며, 따라서 청자에게 영향을 주는 화자의 작용(action)과 청자와 화자 사이에 절충되는 의미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을 화용상의 의미는 포함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화용론의 연구 영역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다음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예'라면 그것은 바로 화용론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i) Is reference made to addressers, or (as I shall prefer to call them, ignoring the speech/writing distinction) SPEAKERS or HEARERS?
- (ii) Is reference made to the INTENTION of the speaker 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earer?
- (iii) Is reference made to CONTEXT?
- (iv) Is reference made to the kind of ACT or ACTION performed by means of or by virtue of using language? (Leech 1981: 320-321)

2. 수행발화문(Performatives)과 세 종류의 행위(Three kinds of acts)

J. L. Austin은 1962년 출판된 *How to Do Things with Words*에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발화문(utterance)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 A. they do not 'describe' or 'report' or constate anything at all, are not 'true or false'; and
- B. the uttering of the sentence is, or is a part of, the doing of an action, which again would not normally be described as, or as 'just', saying something. (p. 5)

그리고는 다음의 예문을 들었다.

- (2) a. I do. (uttered at a marriage ceremony)
- b. I name this ship the 'Queen Elizabeth'.
- c. I give and bequeath my watch to my brother.
- d. I bet you sixpence it will rain tomorrow. (p. 5)

화자는 위 예문을 발화함으로써 진실 또는 거짓으로 여겨지는 어떤 종류의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약하고 명명하고, 유언하고, 내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Austin은 이와같은 문장들을 constative에 대응하여 수행발화문(performative sentence) 또는 줄여서 'performatives'라 불렀다. 이 말은 동사 'perform'에서 유래하는데 그 의미는 '발화하는 것이 바로 행위를 수행한다'(the issuing of the utterance is the performing of an action)는 것이다.

수행발화문은 통사적으로는 서술문(statements)과 흡사하지만 쉽사리 거짓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서술문과 구별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 A: I declare that King Charles II was a coward.
- B: That's false.

(3)에서 B의 응답이 의미하는 바는 A의 수행발화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 내포된 명제 즉, 'That King Charles II was a coward'를 부정하는 것 같다. 이와같은 수행적 발화의 특징적인 통사표지(syntactic marker)는 다음과 같다.

- (i) The subject is in the first person. (I or we)
- (ii) The verb is in the simple present tense. (state, ask, pardon, etc.)
- (iii) The indirect object, if one is present, is 'you'.
- (iv) It is possible to insert the adverb 'hereby'.
- (v) The sentence is not negative. (Leech 1981: 322)

위의 표지 모두가 다 나타난 것이 다음 (4)의 예문이다.

- (4) I hereby declare to you my innocence.

이러한 수행발화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문의 진위가 아니라 '행복' 또는 '적절' 조건이다. Leech (1981)는 이 조건을 화행의 조건(speech-act condition)이라 불렀는데 다음 문장(5)의 화행의 조건은 (6)과 같은 것이 되며 이 조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5)의 발화는 'unhappy' 또는 'inappropriate' 하게 된다고 하였다.

- (5) Please shut the door.
- (6) (i) The speaker and the addressee of this sentence are in some kind of relationship which allows the speaker to make requests of the addressee.
- (ii) The addressee is in a position where he is capable of shutting the door.
- (iii) There is some particular door which the speaker has in mind and which he has

reason to assume the addressee can identify without any further descriptive aid on the speaker's part.

(iv) The door in question, is, at the time of utterance, open.

(v) The speaker wants that door to become closed. (Leech 1981: 321)

Austin은 'to say something may be to do something'이라는 관점에서 화자가 하나의 발화를 함에 있어 동시에 다음 세가지 행위(three kinds of acts)를 수행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 (i) 표현 행위 (locutionary act)
- (ii) 표현내적 행위 (illocutionary act)
- (iii) 언향적 행위 (perlocutionary act)

표현 행위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행위(act of saying something)요, 표현내적 행위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가운데 이룩하는 행위(act performed in saying something)이며, 언향적 행위는 무엇인가를 말함으로써 수행되는 행위(act performed by saying something)이다. 예를들면, 아이가 자지 않으려고 할 때 가서 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자.

(7) I'll turn your light off.

이때 표현행위는 'I'll turn your light off.' 라는 문장의 발화이다. 그러나 나는 그 발화가 위협(threat)으로 해석되도록 의도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나의 표현내적 행위이다. 또 내가 나의 발화로 부터 따라 나오게 하려는 행동이 있는데 내 아이가 취하게 되는 그 결과의 행동 즉, 아이가 두려워서 조용히 잠드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결과의 행동은 앞의 두 행위라 구분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향적 행위이다.

어떤 문장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표현내적 행위는 특별한 표현내적 효력(illocutionary force)을 가진 그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즉 화자가 특별한 의미로(표현 행위), 특별한 효력으로(표현내적 행위) 청자에 대하여 어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장을 발화한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표현내적 효력은 단지 발화에 내포되어 있고 표현행위의 부분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 Austin이 수행발화문(performative)이라고 한 발화문에서는 표현내적 효력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라 하겠다.

다음 예문을 보자.

- (8) a. I promise to come tomorrow.
- b. There is a bull in the field.
- c. I shall come tomorrow.

(8a)는 표현내적 효력이 그 표현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명시적 수행발화문(explicit performative)이며, (8b)는 그 표현적 발화만으로서 표현내적 효력이 경고(warning)인지, 자랑(boost)인지, 아니면 그저 정보제공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수행발화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speech act라 불리는 것으로 철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8c)는 (8a)와 (8b)의 중간 쯤에 해당하는 것으로 Austin

은 이를 암시적 수행발화문(implicit performative)이라 불렀는데 modal verb인 'shall'이 약속이라는 표현내적 효력의 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화행의미론(speech-act semantics)의 한 가지 문젯점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다의성(ambiguity)을 생각할 때 직면하는 문젯점은 어떤 분명한 표현내적 효력의 지표가 없는 문장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위의 (8b)의 경우 이 문장이 실제 사용될 수 있는 몇몇 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본다면 울타리를 막 넘어갈려는 보행자에게는 경고(warning)로, 농장의 신입보조원에게는 언명(statement)으로, 이웃 농장 주인에게는 자랑(boast)으로, 말쑥꾸러기 소년에게는 위협(threat)으로 각각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절조건(felicity condition)은 발화에 기초를 두고 정의되지 사용되고 있는 문장에 기초를 두고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고 언명, 자랑, 위협 등에 관한 적절 조건은 모두 구분되어야 한다. Austin은 상이한 언어행동이 있는 것만큼 많은 상이한 조건의 집합들이 있으며 그 수효는 네자리 숫자(1,000에서 10,000사이)라고 할 만큼 많다고 했다. 그러므로 화행의미론은 모든 언어 문장은 더욱 다의적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언어의 화자로서의 모국어 사용자의 직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3. 화행의 조건(Speech act conditions)과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s)

Austin 사후 화행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저서는 John R. Searle의 *Speech Acts*(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이다. Searle은 하나의 표현내적 행위인 'promise'에 대한 상세한 토론을 통해 특별한 종류의 표현내적 행위의 수행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집합을 서술함으로써 표현내적 행위의 개념을 설명하려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의 관심은 잠재적으로 중의적인 발화가 '약속'으로 의도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지 않고 'I promise X'라는 형태의 발화가 어떻게 '약속'으로 '행복하게' 이해될 수 있는가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약속하기'를 지배하는 다섯가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i) propositional content rule - in a promise an act must be predicated of the speaker and it must be a future act - a speaker cannot promise to have done something nor promise that someone else will do something.
- (ii) preparatory rules -
 - (a) a promise is defective if the promiser doesn't believe the promisee wants it done or even if the thing promised is something the promisee doesn't want done - otherwise whatever the speaker's intention it will act as a warning.
 - (b) a speaker cannot promise to do something he would be expected to do anyway - as Searle observes any husband who promises his wife not to be unfaithful in the next week is likely to provide more anxiety than comfort.
- (iii) sincerity rule - the speaker must intend to perform the action; although as Searle admits it is in fact possible for someone to promise with no intention at all of honouring it, but then he is abusing the procedure.
- (iv) essential rule - the uttering of the words counts as the undertaking of an obligation to perform the action.

(Coulthard 1977: 23-24)

Austin의 적절조건과 Searle의 상기 규칙의 차이는 발화의 표현내적 행위의 도출에 있다. Austin은 그것이 화자의 의도(intention)의 성공적 실현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Searle은 그것이 청자의 발화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점은 위규칙(ia)를 보아 분명하다. Searle은 'promise'에 대한 방식으로 'request' 'assert' 'question' ,thank' 'advise' 'warn' 등의 분석도 하고있다.

Searle의 초기 연구가 주로 명시적 수행발문을 지배하는 행복조건을 분리하는 데 집중되었지만, 그는 *Indirect Speech Acts*(1975)에서 청자가 어떻게 1차적 표현내적 행위(primary illocutionary act), 다시 말하면 문자적 의미가 아닌 전의(conveyed meaning)를 정확히 해석하느냐의 더욱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9) X: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Y: I have to study for an exam.

Searle은 (9)와 같은 간접화행을 설명함에 있어 Y의 응답이 X의 제안에 대한 거절을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할 때 Y의 1차적 표현내적 행위(primary illocutionary act)는 '거절'이며 문의(litera meaning)를 나타내는 '진술'(statement)은 2차적 표현내적 행위(secondary illocutionary act)라고 불렀다. 그래서 표면에서 1차적 표현내적 행위를 유도하는데에 10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고 그 안에 '회화의 협동원칙', 일련의 추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Searle은 예시상의 목적상 간접지시 또는 요청(indirect directives or request)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능한 실현이 다음의 여섯 범주로 유용하게 두리지어 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 Sentences concerning hearer's ability;
Can you pass the salt?
2. Sentences concerning hearer's future action:
Will you/Are you going to pass the salt?
3. Sentences concerning speaker's wish or want:
I would like (you to pass) the salt.
4. Sentences concerning hearer's desire or willingness:
would you mind passing the salt?
5. Sentences concerning reasons for action:
It might help if you passed the salt.
I don't think you salted the potatoes.
6. Sentences embedding either one of the above or explicit performative:
(therefore not really a separate class)
Can I ask you to pass the salt?

(Coulthard 1977: 25-26)

Searle은 위 두리 중 첫 셋은 그가 1969년에 제안한 지시적 표현내적 행위(directive illocutionary acts)에 대한 적절조건, 즉, 청자의 행위수행 능력과 관계되는 preparatory condition, 화자가 청자의 미래 행동을 예견하는 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그리고 화자가 청자의 행동을 원한다는

sincerity condition을 각각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시한 data를 통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S can make an indirect directive by:

1. either asking whether or stating that a preparatory condition concerning his ability to do A obtains;
2. either asking whether or stating that the 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obtains;
3. stating that the sincerity condition obtains, but not by asking whether it obtains;
4. either stating that or asking whether there are good or overriding reasons for doing A, except where the reason is that H wants or wishes etc., to do A, in which case he can only ask whether H wants, wishes, etc., to do A.

(Coulthard 1977: 26)

위의 일반화는 주어진 data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은 될 지언정 왜 이런 것이 유일한 option이 되는 건지, 또 청자가 어떻게 ‘Can you pass the salt?’와 같은 반화를 듣고서 화자의 의도가 질문인지 요청인지를 결정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려 하지 않는다. 사실 Searle은 청자가

needs some way of finding out when the utterance is just a question about his abilities and when it is a request,

(Coulthard 1977: 26)

라고 인정은 하지만,

it is at this point that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versation (together with factual background information) come into play.

(Coulthard 1977: 26)

라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Searle과 Austin이 그들의 관심을 invented examples에 국한시킨 것은 유감이지만 그들의 연구가 담화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4. 회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

Berkeley의 철학교수인 H. P. Grice는 그의 *Logic and Conversation*(1975)이란 논문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회화상황에 특수한 실용면의 가정과 원칙에 근거를 둔 추리로써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소위 함축(implicature)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하나의 발화문은 말한 것(what is said)과 함축한 것(what is implicated)으로 나누어지며 후자는 다시 what is conventionally implicated와 what is non-conventionally implicated로 나누어진다. 이때 conventional implicature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0) He is an Englishman; he is, therefore, brave.

문장(10)은 ‘그가 용감한 것은 그가 영국인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때의 함축은 단지 단어의 conventional meaning에 의존하는 것이다.

Grice에서 중요한 것은 non-conventional implicature 즉 conversational implicature(회화상의 함축)인데, 이것은 회화상의 일반적인 협동원칙(co-operative principle)과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격률(maxim)을 근거로 하여 함축된 뜻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QUANTITY: Give the right amount of information; i. e.

1.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2.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QUALITY: Try to make your contribution one that is true; i. e.

1.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2. 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RELATION: Be relevant.

MANNER: Be perspicuous; i. e.

1. 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2. Avoid ambiguity.
3. Be brief (avoid unnecessary prolixity).
4. Be orderly.

(Adapted from Grice (1975, pp. 45-6))

결국 Grice에 의하면 청자와 화자 사이의 대화의 양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주면 되고, 대화의 질에 있어서는 진실되고 증거있는 말만 하여야 하면, 또 당면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이어야 하며, 표현이 애매모호하지 않고 간명하고, 정연하여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화상의 함축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는 위의 격률을 지키는 경우에 있지 않고 그것이 깨어진 경우에 있어서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1) Dear Sir, Mr. X's command of English is excellent, and his attendance at tutorials has been regular. Yours, etc.

예문(11)은 철학강사직을 원하고 있는 전년의 한 학생에 관하여 부탁받고 쓴 한 철학교수의 편지이다. 이 편지의 필자는 분명히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을 어기고 있다. 그는 어이없게도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편지의 수취인은 그 편지 발신인이 겉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정보, 즉 편지 내용의 당사자는 철학에 책임자가 아니라는 정보를 전달하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신자는 그 편지의 수취인이 나타난 문장들만 가지고 위의 추리과정을 거쳐 이 함축된 뜻을 이해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의도적으로 그처럼 쓰고 또 수취인은 그러한 의도를 파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Grice의 실용적 의미규정이다.

위에 언급한 격률을 한편은 지키면서 다른편은 어기게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12) A: I saw Mr. X having dinner with a woman yesterday.

B: Really? Does his wife know about it?

A: Of course she does. She was the woman he was having dinner with.

(Clark and Clark 1977: 122)

위 대화(12)에서 B는 A의 첫 이야기를 듣고 논리적으로 다음 (13)의 결론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B가 그러한 결론을 얻어낸 이유는 대충 (14)와 같은 추리 과정을 B가 거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3) The woman Mr. X was having dinner with was not his wife.

(14) A has stated that Mr. X was having dinner with a woman. A has withheld the identity of the woman, thereby giving less information than is desirable. Therefore A appears to be breaking the Maxim of Quantity. But A is observing the CP, I assume. Therefore A will not break the Maxim of Quantity unless, by doing so, he can uphold the CP at a deeper level. This will be the case if A does not know the identity of the woman concerned, for to specify the identity of a woman when you do not know who she is is to break the Maxim of Quality. Therefore A does not know the identity of the woman. But it is unlikely that A does not know the wife of Mr. X; therefore I conclude that (13).

Grice가 회화상의 함축이라 이름붙였던 것은 바로 위 (13)와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그리고 위 (14)의 추리는 A가 양의 격률을 희생하면서 질의 격률을 지켰다고 B가 가정하는 데에서 가능하다 이것은 또한 회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협동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 가능하다. 그러나 위의 대화(12)에서 A의 두번째 진술은 B를 희생시키면서 농담(joke)을 한 것이 된다.

Kempson(1977)은 대화상의 함축에 대한 다섯가지 특질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 (1) They are dependent on the recognition of the Co-operative Principle and its maxims.
- (2) They will not be part of the lexical items in the sentence since their interpretation depends on a prior understanding of the conventional meaning of the sentence.
- (3) The implicature of an utterance will characteristically not be the sole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at utterance. There may well be more than one possible assumption which will reinstate the Co-operative Principle in the face of an apparent breakage. Since these assumptions are not explicit, they are often indeterminate.
- (4) The working out of an implicature will depend on assumptions about the world which the speaker and the hearer share. They will therefore not in general be predictable independently of the shared assumptions particular to individual speakers and hearers.
- (5) They are cancellable. That is, an interpretation which is not part of the conventional meaning of the utterance can be explicitly denied without contradiction.

(pp. 71-72)

5. 수행발화문 분석(Performative analysis)과 회화의 공준(Conversational postulate)

지금까지 논의한 Austin, Searle, Grice 등은 언어철학적인 면에서 회용론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발화문과 표현내적 효력, 화행 및 간접화행의 조건, 회화상의 함축 등의 중요

한 개념을 설정하였다.

한편 의미표시(semantic representaticn) 자체가 심층구조(deep structure)인 문법이론을 주장한 생성의미론자들(generative semanticists)은 상기 화용론에 대한 언어철학적인 통찰력을 직접 생성 변형문법에 접목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수행발화문 분석(performative analysis) 또는 가설이다. 그래서 Ross(1970)는 모든 서술문(declarative sentences)은 그 최상위절로서 단 하나의 명시화된 수행 발화문을 포함하는 심층구조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서술문 (15)는 그 심층구조로서 (16)의 어느 하나에서 도출된다는 것이다.

- (15) Tomorrow will be rainy.
 (16) a. I STATE that (tomorrow will be rainy).
 b. I PREDICT that (tomorrow will be rainy).
 c. I WARN YOU that (tomorrow will be rainy).

또, 명령문 및 의문문도 서술문의 심층구조분석과 유사하게 분석된다고 하였다.

- (17) a. Open the door. ← I COMMAND YOU (to open the door).
 b. How much are those bananas?
 ← I REQUEST OF YOU that (you tell me (how much those bananas are)).

이처럼 심층구조에 주어 I, 간접목적어 you, 그리고 [+V, +performative, +communication, +linguistic, +declarative]등의 자질 (features)을 가진 동사 등을 포함하는 수행발화문을 설정함으로써 유리한 점은 다음 예문들에서 재귀대명사화 규칙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18) a. I told Albert that physicists like $\left\{ \begin{array}{l} \text{myself} \\ \text{himself} \\ *yourself \\ *themselves} \right\}$ are hard to find.
 b. Physicists like $\left\{ \begin{array}{l} \text{myself} \\ \text{yourself} \\ *himself \\ *themselves} \right\}$ are hard to find.

(Newmeyer 1980: 211)

- (19) a. Tom declared that as for himself, he was ravenous.
 b. As for myself, I am ravenous.
 c. *As for himself, Tom is ravenous.

(Leech 1981: 324)

즉, 재귀대명사는 차상위절의 명사구와 인칭, 수, 성이 일치해야 하는데 (18b)의 경우와 (19b), (19c)의 경우는 수행발화문 분석에 의해 심층구조에 'I state that'을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Ross의 이러한 가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 첫째, 수행발화문은 너무 드물어서 모든 직접언명(statements)이 근본적으로는 간접언명에서 도출되며, 또 모든 직접의문이 근본적으로는 간접의문에서 도출된다는 것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이 수행문분석이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의 경우이다.

- (20) As for myself, I promise you that I'll be there.
(Leech 1981:325)

문장 (20)은 이미 걸으로 드러난 수행발화문절을 포함하고 있으나 위에서 주장된 바에 따르면 보다 상위절에 'I PROMISE YOU'가 설정되어 'As for myself'에서 재귀대명사 'myself'가 문법적 입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Ross 스스로 세웠던 규칙인 '어떤 수행발화문도 다른 수행발화문에 내포될 수 없다'에 위배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Searle(1975)은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request)할 수 있는 것은 화자기본성실조건(a speaker-based sincerity condition)을 단언하거나(asserting), 청자기본성실조건(a hearer-based sincerity condition)을 묻거나(questioning)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다음 예문에서 (21b)와 (21c)는 둘다 (21a)의 뜻을 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1) a. Pass the salt.
b. I'd like the salt.
c. Can you pass the salt?
(Newmeyer 1980: 212)

Gordon과 Lakoff는 전달된 의미(conveyed meaning)를 논리적 함의로 다루면서 간접화행을 형식화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회화의 공준(conversational postulate)이다. 그래서 위(21b)와 (21c)는 각각 다음 (22a)와 (22b)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 (22) a. SAY (a, Q) → REQUEST (a, b, Q)
b. ASK(a, b, CAN (b, Q) → REQUEST (a, b, Q)
[a의 해석: 만일 a가 Q를 원한다고 b에게 말한다면 a는 b가 Q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b의 해석: 만일 a가 b에게 Q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a는 b가 Q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정민(1973)은 이러한 형식화에 대해 '빛나가고 일반성없는 조치'라면서 혹평하고 있다. 즉, Lakoff는 다음 (23a)를 맥주를 원한다는 심리 표현의 뜻과 맥주를 청하는 행위의 뜻으로 중의성이 있다는 결론 아래 이 중의성을 상호배제적인 관계로 보고 (23b)와 같이 형식화 하였다.

- (23) a. I want a beer.
b. ASSUME (x, NOT RELEVANT (WANT (x, Q))) & SAY (x, y, WANT (x, Q)) ⊃ REQUEST (x, y, Q)
[만일 X가 Q를 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Q를 원한다고 y에게 말한다면 x는 y가 Q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정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사실은 말하는 이의 요청시의 심리상태는 'wanting Q'가 필수적이고 말하는 이의 가정 속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은 'wanting Q'의 심리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를 표현하는 단순한 assertion force이다. 그리고 일반성이 없다는 이유는 위의 특수한 경우에 二義的인 상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illocutionary act들의 경우에 말하는 이의 심리상태의 표현이 반드시 위와 같은 二義性만을 초래하

지 않는다. 위의 요청의 경우 말하는 이가 Q를 원한다는 것은 요청의 행위를 성립시키는 일군의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건과 그 일군의 나머지 조건들이 충족되고 또한 말하는 이가 그와 같이 의도할 때에 비로소 요청의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욕구의 표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예문 (23a)는 요청의 행위를 성립시키는 여러가지 실용면의 가정에 기초를 둔 추리의 연쇄반응 끝에 백주를 달라는 요청이 된다.

(이정민 1973:202)

결국 이 정민은 어떤 요청을 하는때에 있어서 요청을 하게되는 배경적인 사유의 제시가 요청을 성립시키는 필수 조건은 아니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주어진 문장의 논리구조와는 별도로 회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에 의존한 추리적인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화용론의 중요한 개념을 문헌을 통해 예문과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는 화용론이 지향하여야 할 바에 초점을 두어 서술함으로써 화용론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Grice의 회화상의 함축과 Searie의 간접화행조건들이 공통적으로 넘지시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정중함(politeness)이다. 그래서 Leech(1981)는 화용론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다음의 제의를 하고 있다.

I propose that the most promising approach to indirect illocutions is to extend Grice's concept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to include other principles, apart from the CP, and in particular to include a Politeness Principle. We can then include in our account of pragmatics not only what means exist in a given language for making particular illocutionary acts, but an explanation of why it is that certain semantic types of structure are appropriately used for particular illocutionary purposes.

(Leech 1981: 338)

그래서 다음 문장 (24)는 Grice적 함축에 의해 공손한 요청(polite request)으로 해석되며 이때의 함축은 회화의 목적상 말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해석가능한 일이며, 또 CP와 Politeness Principle과 같은 화용상의 원리를 준수할 필요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24) Will/Can you open the window?

그리고 이 정중성원리의 본질은 긍정적 측면에서는 '상대편을 믿어라'(Give credit to the other person)이며, 부정적 측면에서는 '상대편을 화나게 하지마라'(Do not cause offence to the other person)이다. 이 점은 화자—청자 간에 비대칭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즉 청자에게 공손한 것은 화자에게는 얼마간 공손하지 못한 것이며, 또 화자에게 공손한 것은 청자에게는 얼마간 공손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 (25) a. You will open the window.
 b. Open the window.

(25a)와 같은 언명이나 (25b)와 같은 명령은 청자에게 impolite belief를 주게되므로 화자는 청자가 그런 행동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어떤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화용론이 청-화자 모두에게 문제해결의 책략을 내포한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화용론은 엄격한 규칙으로 형식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에서 본 Grice의 회화상의 함축이라는 개념에 제시된 분석방법을 통하여 복잡하고도 우연적인 언어의 행동양식을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화자가 그와 청자에게 분명한 언어의적상황(extra-linguistic situation)의 양상을 묘사하지 않는 것은 회화의 일반 원칙(가령 Grice의 질의 격률같은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 발화질을 사용함으로써 암시적으로 알려진 발화상황의 자질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도 최소한의 노력의 원리인 회화의 일반 원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발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표현내적 효력을 분명히 명시하기 위한 때인 것이다. 그래서

- (26) a. I promise to pay you tomorrow.
 b. I'll pay you tomorrow.

(26a)는 (26b)라고 하는 경우에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약속의 행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Bibliography

- 이 정민, (1973) Grice적 추리와 논리구조, 어학연구 9/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장 석진, (1976) 화용론의 기술, 어학연구 12/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정 배현, (1983) 점진적 진보에 대한 믿음의 구조 기호학과 철학, 월간조선, 1983년 3월호.
 최 창렬, (1983) 한국어의 의미구조, 한신문화사.
 Austin, J. L. (1976) *How to Do Things with Words*(2nd ed.). Oxford Univ. Press.
 Chomsky, N.(1972) Some empirical issues in the theory of transformational grammar. In Peters 1972.
 Clark, H. H. and Clark E. V.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New York.
 Coulthard, M. (1977) *An Introduction to Discourse Analysis*. Longman.
 Gordon, D. and G. Lakoff. (1975) Conversational Postulates. In *Syntax and Semantics*, Vol. 3.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Syntax and Semantics*, Vol. 3.
 Katz, J. and J. Fodor (1963) The Structure of Ia Semantic Theory. *Language* 39:170-210
 Kempson, R. M. (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Univ. Press.
 Leech, G. (1981) *Semantics* (2nd ed.) Penguin Books.
 Morris, C. (1938)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Sign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I:2.
 Newmeyer, F. J. (1980) *Linguistic Theory in America*. Academic Press.
 Palmer, F. R. (1981) *Semantics* (2nd ed.) Cambridge Univ. Press.
 Searle, J. R. (1969) *Speech Acts*. Cambridge Univ. Press.
 _____, (1975) Indirect Speech Acts in *Syntax and Semantics*, Vol. 3.
 Smith, N. and D. Wilson (1979) *Modern Linguistics: the Results of Chomsky's Revolution*. Indiana Univ. Press.

